

발언1 : 재심청구의 경위 및 취지

- 이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승일 재심청구 변호인단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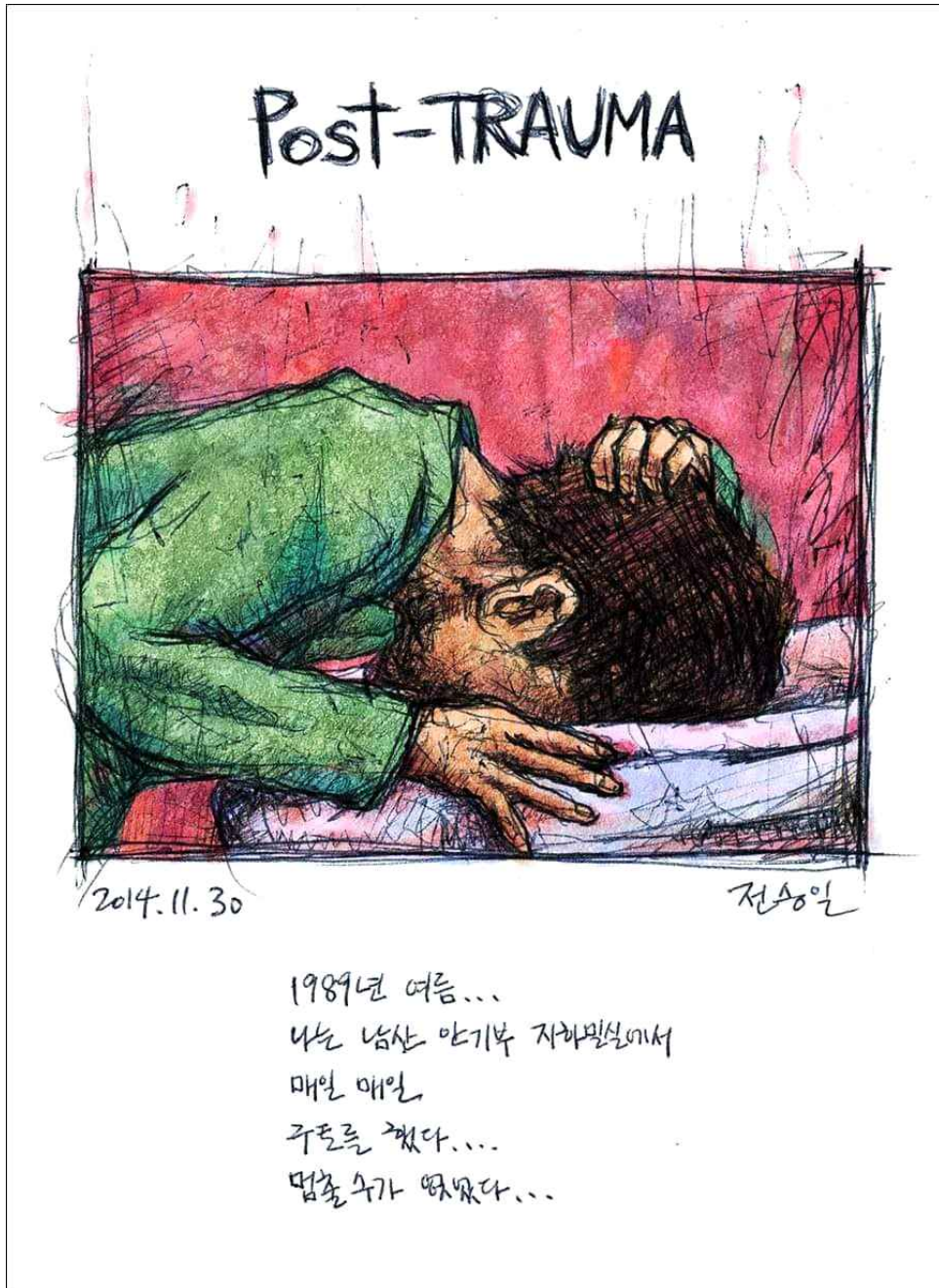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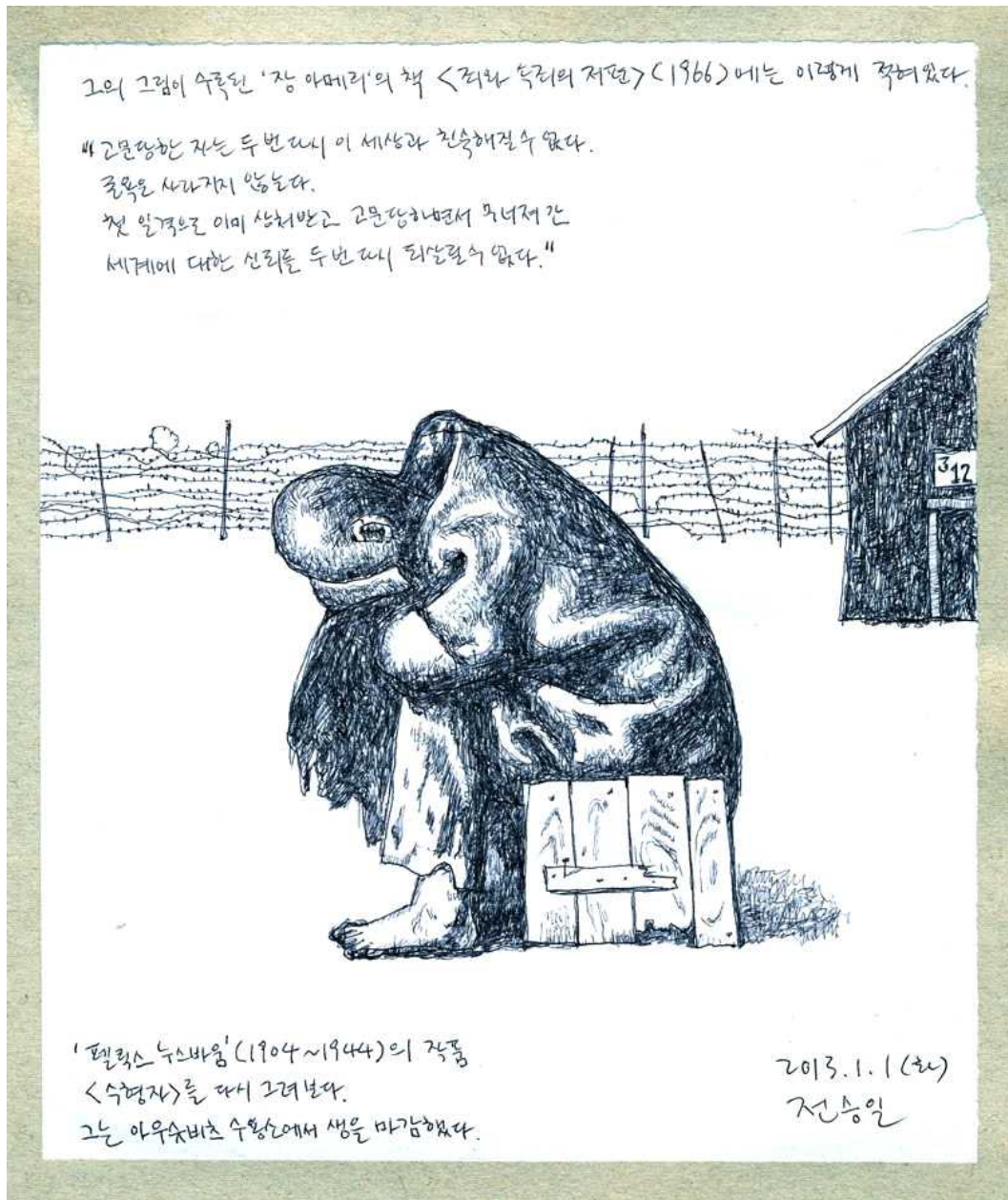


그림1. <구토>

재심청구인 전승일 감독이 안전기획부 지하 밀실에서 취조받을 당시 고통스럽 게 구토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

첨부 1.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기자회견 발언 내용 정리



펠릭스 누스바움의 <수형자>를 ^{그림2}진승일 감독이 다시 그린 그림.

“고문당한 자는 두 번 다시 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없다. 굴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첫 일격으로 이미 상처받고, 고문당하면서 무너져 간 세계에 대한 신뢰를 두 번 다시 되살릴 수 없다.” - 장 아메리, 『죄와 속죄의 저편』



그림3, <PTS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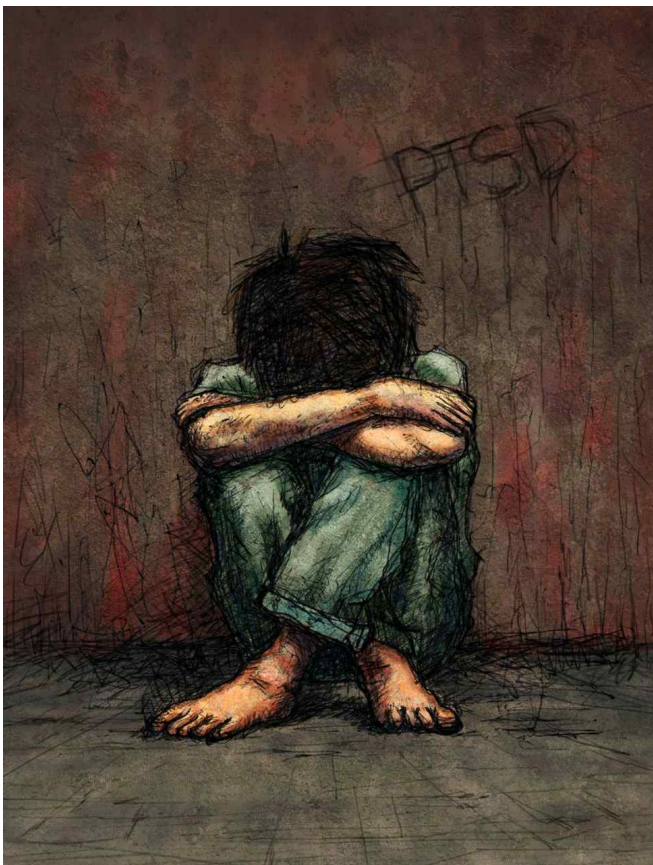


그림4, <PTSD 2>

전승일 감독이 제작한 AI 애니메이션 <Sensitive Generation>에 등장하는 그림들로서,

PTSD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감독 본인의 형상을 표현한 것임.

1. 사건의 경위

-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985. 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재학 중 1987 8.경 ‘청년미술공동체’ 대표 등을 거쳐 1989. 3.경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준비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오던 자임.
- 청구인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민족해방운동사’ 대형걸개그림을 제작하여 대학 캠퍼스에 전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및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9.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12. 14. 선고 89고단7429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1991. 4. 10. 항소심에서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4. 10. 선고 90노1351 판결).
- 이후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위 활동과 관련하여 2007. 8. 24.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한다는 증서를 받음.
- 그러나 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죄판결이 여전히 확정 판결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당한 불법적인 신체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여전히 PTSD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2. 사건의 의의

-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체포 및 감금,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법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 연장을 하였는바, 검찰의 직권남용과 법원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건임.
-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겪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으며, 이를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국가폭력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바, 재심을 통하여 청구인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사건임.
- 이 소송으로 개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희생되었던 민주화 운동가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의 반성 및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길 기대함.
- 재심이 개시된 이후 ‘민주화운동’ 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룰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일단 재심개시 결정 자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임. 국가의 부당한 구속과 가혹행위에 기초한 수사에 터 잡은 유죄 판결에 대하여 다시 정당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치유의 과정일 것.

● **발언2 : 재심사유 개괄**

- 박찬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근거가 되는 재심사유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호의 재심사유

1)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 당시 형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01조, 유사 사건 판례에 의하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기 위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임의동행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동행을 거부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거나 동행 과정에서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 청구인이 당사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 및 ‘민미련 사건 자료’ 중 청구인이 당시 작성한 편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명예회복 신청서 내용에 의하면 체포영장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연행되었다는 사정이 명백히 드러남.
-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당시 수사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동행 보고’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바,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 제229조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함.

2) 불법체포·감금죄 (구속영장 발부 전 법적 근거 없는 구금)

- 당시 형사소송법 제206조 및 제207조, 유사 사건 판례에 의하면 연행 당시 긴급구속의 사유 등을 고한 바도 없고, 검사로부터 사전 지휘를 받은 바도 없으며,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다면 연행시부터 구속영장 집행시까지의 감금은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함.
- 강제연행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1989. 8. 25. 청구인은 안전기획부 내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받음. 그 다음날인 1989. 8. 26. 알 수 없는 시각에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바, 강제연행 이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의 집행 시점(1989. 8. 26. 20:50)까지 계속해서 안전기획부에 구금되었음.
- 이러한 구금은 긴급구속을 고지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사후승인을 받았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 긴급구속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긴급구속에 의한 구금이라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구형법 제124조 제1항 불법체포 및 감금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함.

3)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 (법적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구속기간 연장에 따른 구금)

-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구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첨부 1.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기자회견 발언 내용 정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문성우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이 1989. 8. 26.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됨. 그 10일 뒤인 1989. 9. 4.에 청구인에 대한 경찰 구속을 1989. 9. 14.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기간 내인 1989. 9. 11. 검사에게 인치됨.
- 이에 따라 검찰의 최초 구석은 1989. 9. 20.까지만 가능한 것인데, 판사가 1989. 9. 20., 1989. 9. 30.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함.
- 위와 같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의) 각 구속기간 연장은 구 국가보안법 특례규정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함.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가 아닌 ‘신청’을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의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은 심지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근거한 결정이었음.
- 이는 구 국가보안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명백한바, 구형법 제124조 제1항 불법체포 및 감금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 청구사유에 해당함.

4) 가혹행위죄의 성립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구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등이 형사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의 편지 및 변호인 상담내용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 8.

24. 불법연행시부터 1989. 9. 11. 서울구치소 수감시까지 19일 동안 협박 및 모욕, 감시,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남.

- 이러한 가혹행위는 구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죄에 성립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 청구사유에 해당함.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18호)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후 위 조항에 대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는바, 한정합헌은 한정위헌으로 해석하여 기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함.

● **발언3 : 위헌적인 법률조차 준수하지 않은 구속기간 연장의 문제점**

- 황호준 변호사 (더호 법률사무소, 민변 사무차장)
- 구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 특례 규정의 위헌성과 이 규정조차 위반한 구속기간 연장 [재심사유 가.3)항 부분 참조]

1. 당시 관련 법률 규정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3993호)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3955호)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u>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u>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u>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u>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u> 허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 원칙(형사소송법) : 10일 - 예외(국가보안법)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결정 거쳐서) 10일 연장 가능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u>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u>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u>검사의 신청에 의하여</u>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u>1차에 한하여</u>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u>검사의 청구에 의하여</u>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u>2차에 한하여</u> 허가할 수 있다.
검사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 원칙(형사소송법) : 10일 + 10일 - 예외(국가보안법) : (검사 청구 → 판사 결정 거쳐서) 20일(10일 × 2차) 연장 가능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 결정

-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 ⇒ 구 형사소송법상 원칙적 구속기간 연장 한계에 더해 추가적인 구속기간 연장을 30일씩이나 허용한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2년 4월 위헌 결정 선고.

-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1992. 4. 14. 선고된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재심청구인에 대한 1989. 9.경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그 자체로 소급하여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함.

- ⇒ 다만, 아래 3.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1989. 9.경 검사와 판사는 이렇게 위헌적인 구 국가보안법 규정상 절차 규정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로 재심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하고 집행함.

3. 구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 절차 규정 위반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속 기간 연장 결정

영장번호 89-9919

죄 명 국가보안법 위반

피 의 자 전 승 일 (全承逸)

생년월일 1965. 10. 30 생

직 업 학 삼 (서울대 미대 4년, 학미연대표)

주 거 서울 은평구 녹번동 144-38

주 문 1989. 9. 14. 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문 경 구 의 신청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가보
안법 제 19 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4.

판사 DL NO 1989. 9. 4. 198

440 3-20 198

[구 국가보안법 제19종 제1항1)에 의하여야 하는 경찰 구속기간 연장]

1)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속 기간 연장 결정

영장번호

피 犯 국가보안법 위반

피 의 자 신 송 일 ()

생년월일 1965. 10. 30

직 업 학생

주 처 서울 은평구 북변동 144-38

주 문 198 年 10 月 30 日 까지 피의사 에 대 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

이 유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 김 광 의 의 신청인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제20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 年 10 月 30 日

판 사 송 대 30

204-2

3-20

[구 국가보안법 제19종 제2항2)에 의하여야 하는 검찰 구속기간 1차 연장]

- 2)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구속 기간 연장 결정

연장번호 서형 7243/

직 명 국가보안법 위반

피 의 자 전 승 일 ()

생년월일 1965. 10. 30 생

직 업 학생

주 거 서울 은평구 농변동 144-3내

주 문 1989. 10. 10. 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

이 유 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 김 학 역 의 선정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 20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0.

판 사 홍승환

35-3
125

3-20

[구 국가보안법 제19종 제2항3)에 의하여야 하는 검찰 구속기간 2차 연장]

3)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첨부 1.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기자회견 발언 내용 정리

- ⇒ 이처럼 1989년 경찰과, 검사, 판사는 (사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것임이 확인되어 폐지된) 구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 특례 규정의 절차적 요건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로 재심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막무가내로 연장함.

- ⇒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민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검사의 막무가내식 구속기간 연장 시도에 대하여 판사가 그 적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연장을 허가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첨부 1.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기자회견 발언 내용 정리

● **발언4 : 재심청구 소회**

- 전승일 감독 (재심청구인 당사자)